

예 산 총 칙

2018년도 본예산

제 1 조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구 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합 계	313,893,074	9,416,792
일반회계	277,969,695	8,339,091
특별회계	35,923,379	1,077,701
공기업특별회계	9,944,597	298,338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9,944,597	298,338
기타특별회계	25,978,782	779,363
수질개선 특별회계	10,870,490	326,115
주택사업 특별회계	3,862,738	115,882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	592,694	17,781
자활기금 특별회계	1,802,000	54,060
농공단지조성 및 관리 특별회계	7,651,000	229,530
주차장관리 특별회계	650,257	19,508
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 특별회계	458,870	13,766
기반시설 특별회계	32,529	976
발전소주변지역지원특별회계	58,204	1,746

제 2 조 세입·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 예산"과 같다.

제 3 조 채무부담행위조서는 별첨 "채무부담행위조"와 같다.

제 4 조 계속비사업은 별첨 "계속비사업조서"와 같다.

제 5 조 명시이월사업은 별첨 "명시이월사업조서"와 같다.

제 6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5,961,890천원으로 한다.

제 7 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공기업 특별회계 포함) 지방채차입한도액은 4,700,000천원으로 한다.

제 8 조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기준인건비에 포함된 경비와 재해대책·복구비 및 동일 부서에서 동일 부문에 있는 정책사업간의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